

“연말연시·명절 택배 물량 과중...집배원 안전 대책을”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남우정청 앞 기자회견 “지난해 추석 이후 택배 증가세, 인력 재배치·물량 조정해야”

광주·전남 지역 우체국 집배원들이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서 택배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연말연시·설 명절을 맞아 과로사·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남본부는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전남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우정 노동자들은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과로사·안전 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보통 추석 연휴가 지나면 물량이 조금씩 줄어

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집배원 택배 배달 물량은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륜차로 배달하기 어려운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큰 택배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력 확충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조과 근무에 대한 압박도 심하고 제대로 일한 만큼 보상이 못 받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소포 우편물 폭주

기 특별소통계획’으로는 우정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고를 막기 어렵다”라고 평했다.
단체는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가 조만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정 노동자들의 택배 업무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책으로는 ▲토요일 택배 전면 폐지 ▲택배 접수 후 익일 배달 규정 완화 ▲정규직 집배원 임용 인력 즉시 재배치 ▲배달 및 구분 인력 증원 ▲오전 9시 이후 도착 택배 물량 배달 금지 ▲일몰 이후 배송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위탁 택배원 물량 통제 중단, 시간제 집배 인력의 전일제 전환 등 인력 보강, 코로나19 예방 장비 신속 보급 및 백신 예방 1차 접종 등을 제안했다. 김민정기자



檢, ‘성착취물 유포·범죄수익 은닉’ 조주빈 징역 15년 구형

박사방 범죄수익 1억800만원 은닉 혐의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1억800만원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과 ‘도널드트럼프’ 강모(25)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 조직을 만들었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모욕, 협박 등을 저질렀고,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해야 할 수 없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유치추적장치 부착 15년, 피해자 접근금

지, 유치원·초·중고 접근금지, 취업제한 등 명령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 대해 검찰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맞할 것도 없다”면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저의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감정이 변치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조주빈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조주빈에게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이른바 ‘오피남’이라고 불리는 공범 정모씨에게 모델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올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파트입구 차 안에서 쿵쿵...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

아파트 내부 통행을 막은 채로 차에서 잠이 들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11시36분 광주

북구의 아파트 특정 동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18분 동안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서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파트 입구 오른쪽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 아파트 안 도로 통행을 막은 채로 정차해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민정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소년범 전과’ 부서관 불합격...인권위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부서관 선발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 및 신체 검사 등을 모두 통과했으나, 과거 소년범상 보호 처분 이력을 이유로 응시생을 최종 불합격시킨 조치를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해병대 부서관 선발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 신체 및 인성검사 등을 모두 통과했다.

포함해 범죄 경력이 있는 신원특이자 7명이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 진술과 달리 범죄 경력 등 신원조회 결과는 이 사건 부서관 선발 과정에서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소년범상 보호 처분으로 인해 그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 처분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부서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

과거 소년범상 보호처분...최종 불합격 조치

해병대 “무조건 불합격 아냐...종합판단 거쳐”

인권위 “보호 처분으로 불이익...비합리적”

그러나 A씨에게는 과거 소년범상 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해병대 측은 A씨를 최종 불합격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가 선발심의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심의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 합격자를 결정한다”며 “신원조사에 특이점이 있다고 해당 지원자를 무조건 불합격시키는 것은 아니고, 각종 평가 점수와 종합적인 판단 하에 표결로 최종 선발을 확정한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응시생들 중 A씨를

기는 어렵다”며 “소년부 송치 기록(보호 처분)까지 조사·반영하는 것이 과연 직업 군인이 되려는 사람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년범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보호 처분의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최이슬기자